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사이버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들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안은 한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내용 규제 제도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1.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 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¹⁾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욕설도 없고 (굳이 찾아 본다면, '순악질 세훈씨'라는 표현 정도?), 서울시장을 비꼬는 내용과 사진이 있을 뿐이다.

1) <http://savenature.egloos.com/1592771>

삭제되었다는 글 원문은 <http://blog.ohmynews.com/savenature/199381>

[대능고비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00씨 판박이네!

서울시장은 '광장'을 '광장'이 아니라 한다.
광장이 아니라 '문화'광장이라 한다.

광장

- 1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 터.
- 2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사출처 : 시티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한 호텔에서 사실상,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주제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로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시장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기하고 가식적인 연예인들의 댄따라와 '대~한~민~국'이나 즐기시라고, 문화적 행사만 하도록 시청광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에겐 민중들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허울 좋은 '문화와 예술'이 우선인 듯싶다. 서울시장 되더니만 말도 안 되는 '한강르네상스' 부르짖으며, 청계천 복원한답시고 하천이 마닌 콘크리트 쳐 발라 불거리로 만들려고 시장에서 평생을 먹고 살아온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용역동원해서 폭력 일삼아 놓고 그것을 치적인 양 자랑하는 00씨처럼 되려고 하는지 저러고 있다.

'진심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왔다'는 법 좀 안다는 미가 할 소리인지?
머 예전부터 그다지 신뢰가지 않는 처였다.

*** 관련 글 :**

- 대책없는 개발사업으로 쫓겨난 서울시민, 646일째 거리농성
-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되살아난 괴물 '경인운하'

○ 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²⁾

2008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2) <http://wnsgud313.tistory.com/156>



○ 경찰청의 삭제 요구³⁾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 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⁴⁾

2009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깍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

4) <http://blog.jinbo.net/gimche/?pid=668>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족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장윤석·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한나라 "철거민들, 지난4월에 민노당 집단입당"](#)

[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민중당 "사지로 돌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청와대, 김석기 내정 철회 안 한다](#) (참세상, 미꽃맘 기자, 2009년01월22일 17시55분)
[\[살민진압\] "국민 생명을 청장 자리값만도 못하게 생각"](#)

["제2의 전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대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약자를 위해 살겠다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참세상, 미꽃맘 기자, 2009년01월21일 21시15분)
[\[기자의눈\]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⁵⁾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

진압봉 휘두른 302전경대장 조삼환 경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조삼환 경감이 지하도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지휘 차량 안에서 해산이나 체포 명령을 내리는 전경지휘관들은 봤으나 직접 대원들의 선봉에서 맨몸인 시민들을 마치 뭔가 미친 듯이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이게 경찰의 본래 모습'인지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집단'의 구성원이라 그런지 헛갈려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무엇이

나. 기업의 노조 탄압에 이용된 사례

○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⁶⁾

2007년 8월 14일, '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라는 제목의 글⁷⁾이 네이버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사측인 '이랜드월드'. 이 글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며, 게시자는 이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5줄의 견해를 남겼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30일 후 복구되었다.

6) <http://blog.jinbo.net/gimche/?pid=492>

7) <http://blog.naver.com/gimche/150021000496>

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 노동

2007/08/09 12:33

<http://blog.naver.com/gimche/150021000496> **복사**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어떻게 끝날까.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끝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파업기금이라도 제대로 모으는 게 우선일 듯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래 글 중에 이랜드 사태 일지에 대해 쓴 매일노동뉴스 구은희 기자의 기사와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라는 제목의, 인권오름에 실린 명훈님의 글을 읽어보길 권한다.

**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7일, 구은희 기자)
총회·엠티·간담회·수련회 등 잇달아 개최... "강도 높은 투쟁 준비할 것"**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가 노조가 최근 간담회·총회·수련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의 매장점거 농성과 경찰의 조합원 강제연행, 노조 지도부 대거 구속,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 협상 등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두 노조가 장기파업에 지친 조합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매장 점거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이 재현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⁸⁾,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관련 게시물 23건, 다음(Daum)의 관련 게시물 25건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되었다. 그러나 30일 후 네이버에서는 위 게시자의 글 1건, 다음에서는 23건의 게시물이 복구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의 정책 차이 때문이며, 법에는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30일 후에는 복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가 임시조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 한술교육 학습지 노조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⁹⁾

2007년 8월 31일, 한술교육 학습지 교사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이 한술교육측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접근 차단된 상태인데, 게시자도 한술교육 학습지 노조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노조의 투쟁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다. 공익적 활동 및 정치적 비판에 대한 통제로 이용된 사례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의 임시조치 요구

8)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80246&g_menu=020300

9) <http://blog.naver.com/rnstkddl/70021555222>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대한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게시물은 임시 차단되었다.¹⁰⁾ 이에 이종걸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이 역시 임시조치되었다. 다음(Daum)측은 이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는 4월 21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게시물은 원상복구 되었다.¹¹⁾ 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¹²⁾

그러나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

한 블로거는 ‘장관님들은 어느나라 말로 보고받을까?’라는 제목의 포스팅¹⁴⁾을 통해,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장관들을 비꼬았는데, 이 게시글 역시 (주인공도 아닌) 조선일보에 의해 임시조치당했다.¹⁵⁾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라. 기업의 상품에 대한 비판 게시글 통제

○ 티켓무비 사례¹⁶⁾

2009년 3월 6일, 다음(Dau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게시글 중 ‘인터넷 영화에 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¹⁷⁾라는 제목의 글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이 글은 단지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답답하게 기술했을 뿐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티켓무비와 관련된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도 다수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자사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 요청을 한 사례이다.**

1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0524>

1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852>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70.html

13) <http://blog.daum.net/moonsoonc/8494304>

14) <http://blog.daum.net/cangmin/15706551>

15) <http://blog.daum.net/cangmin/15706553>

16) <http://blog.daum.net/polelate/7883948>

17) <http://blog.daum.net/polelate/7883871>

예매가능 시간은 10:00 ~ 16:00 이란다. 단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일 예매는 불가하단다. 다른 사이트는 24시간 온 종일 가능한데, 그리고 영화관에 따라 다르지만 당일 예매가 불가능한 영화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당일 예매가 가능하다. 나는 이 사이트를 이용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예매하는 시간은 늦은 밤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때로는 자정을 넘겨 당일 예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정을 넘겨 예매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당일 취소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매 다음날 취소하더라도 결제방법이 카드, 포인트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결제 하였을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혹 낮에도 예매를 하지만 그런 경우는 가끔에 공 나뉠 한다. 예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았더니 영화 예매권이나 연간회원권을 가진 사람만이 예매 할 수 있다. 다른 사이트처럼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통한 예매가 아니다. 따라서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할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영화 예매를 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이미 발권된 예매권이나 회원권을 통한 영화 예매사이트로 보였다. 무통장 입금에 대한 예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무통장 입금에 따른 예매를 하기 때문에 예매 가능시간에 제약이 있고 입금 확인 후 예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예매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티켓무비의 영화예매권을 일부러 사용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티켓무비의 영화예매권이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걸려 있다면 응모하지 말아야 겠다.

Add 1. 지난 2월 2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 '티켓무비' 관련 이슈청원이 올라와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154> (2009.02.23)

Add 2. 지난 3월 6일 티켓무비측의 신고로 인해 다음측에서 임시접근금지조치 되었던 이 글이

30일이 경과된 4월 5일 임시접근금지조치가 풀렸다.(2009.04.05)

이 사례에서 게시자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Daum)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지만, 30일이 지나 게시글이 복구되기 전에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 않은 문제, 방통심의위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명예훼손 근거가 없어 글이 복구될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되었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처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 한 것은 3월 8일이었고 처리완료 메일을 받은 3월 17일까지 걸린 시간은 9일이었다. 그리고 Daum과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다시 게시물의 심의요청을 한 것이 3월 19일이었다. 바로 등록이 되었지만 17일이 지나도록 처리되고있지 않다. 언제쯤 처리될지 궁금하다. 처리가 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예전 교통카드 과다청구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교통카드회사와 해결이 난 후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국민 신문고의 답변은 ‘교통카드회사에 알아보니 해결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는 답변이었다. 아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는다면 ‘국민신문고와 비슷한 답변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30일이 지났고 글이 원상복구 되었으니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글이 30일간 임시접근금지조치를 당했다면, 어쩔 수 없이 30일간 타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조치를 취한 Daum과 같은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신고만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없음 또는 해당 없음의 결정을 얻기 위하여 조치를 내린 Daum에서 밝힌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안의 판단이 너무 어려워 시일이 걸리는지도 모르지만 30일 이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고번호 3549에 대한 답변이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등록 후 17일이 지났다. 등록 후 30일 이내에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어떤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신고만 하면 30일 동안 임시 접근금지조치가 되고, 게시물을 쓰고 등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혐의 없음 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밝히고 글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쉽지 않을 뿐더러 30일이라는 시일 내에 발휘 수 없을지도 모른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해진 날짜에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한 신고자의 입장에서 30일 이내에 혐의 있음을 입증하면 그 글은 즉시 삭제된다. 그러나 신고자의 입장에서 그 혐의 있음을 밝히는 과정도 이와 같을 테니 임시접근금지 조치 기간동안 삭제 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글의 내용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겠지만 3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신고자도 눈에 가시 같은 글을 30일 동안 빛을 못 보게 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30일 후에도 그 글이 복원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한 시도가 단 한 건의 신고로 이루어지니 어려울 것도 없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시점에서 권리침해 신고 절차가 궁금해졌다.

캡처 9. Daum 고객센터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

신청요과

다음 내 회원이 작성한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및 기타 법률상 권리 침해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권리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용자(카페의 경우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에게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침해의 의심이 되는 게시물, 메뉴를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합니다. 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공개 게시, 초상권 침해 등 침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 및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됩니다. 명예훼손 주장 등으로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글은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간 임시삭제 조치 됩니다.

○ 가격비교 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18)

2007년 8월 22일, 네이버 카페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에서 4건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다. 30일에도 또 다른 글이 차단되었는데, 모두 흥출판사의 어린이용 책값을 매장별로 비교한 뒤 최저 가격을 알려주는 글이었다. 흥출판사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이다.

○ 곰플레이어 사례19)

이글루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게시자는 2007년 8월 2일,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임시조치 당했다. 요청자는 곰플레이어 제작업체인 (주)그래텍. 게시자가 삭제해서 원 글은 볼 수 없지만, 삭제된 글은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공개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글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2819.html

19) <http://zeprid.egloos.com/3655712>

의혹을 제기한 다른 블로거의 게시글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글루스 역시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후에도 계속 차단하고 있다.

■ 공플레이어

2007년 8월 2일 이글루스는 (주)그래텍으로부터 권리침해를 근거로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았습니다.

'공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기사나 글이 배포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에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다음 포스트는 임시로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_=:;

내글에서 저장을 할거라는 단정은 지은적이 없는데 멋대로 비공개로 전환해버렸네요..
강 귀찮아서 글 지워버렸습니다..

요지는 공플레이어쪽에서 동영상 자막체크시 사용하는 key= 값생성은 md5 로직으로 동영상파일의 앞부분 1메가바이트 부분에서 생성시킨 값으로 검색한다는 것..

공플레이어에서 유저가 자막요청시 그 데이터 받아서 서버에서 무슨짓을 하는지 나는 모르므로 그들이 그것을 로그로 남겨서 수집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일반 유저가 알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서버에서 하는 로직이나 코드나 뭔가를 공개하고 자기들은 수집안한다고 말해야 의혹이 안생기지..

성인동영상 사용비율 40%인가 60%인가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데 미쳤다고 자기컴퓨터 사용내역을 수집해도 되게 허용해놓고 야동보는 넘이 그렇게 다수가 나온다는건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²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 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20) <http://pillua.egloos.com/508955>

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9191219&Section=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 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²²⁾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²³⁾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 재판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는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구가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인 '1000마리 철새 때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²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글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임

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

24) <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

시조치되었다.²⁵⁾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조차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²⁶⁾ ‘발암 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부의 표현과 부정확한 사실(물론 게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전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삭제 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21조 4호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이유),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도 회부하지 않았다. (게시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어

25) <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52234.html>

보고자 하였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²⁷⁾

2009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현행 내용규제 제도의 문제점

1) 임시조치 제도(제44조의 2)

가.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 인터넷 상의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는 절차 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절차(notice & take down)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 및 나경원안은 이 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절차의 부재

최대 30일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 혹은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없다.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Daum)의 경우, 임시조치 요청자가 관련기관의 명예훼손 결정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에 복구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다시피, 게재자

27)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le_id=20090429134154

들이 위축 효과와 처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임시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게시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판단 기간의 문제

현재 임시조치 후 사업자 혹은 당사자가 심의요청을 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방송 및 통신심의 등 방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심의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 조정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에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표현을 보호받아야 할 게시자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 권력자에 의한 임시조치 남용

임시조치 제도가 권력자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어 왔다. 이들 권력자들은 명예훼손 등 실제 위법하지 않은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청함으로써,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시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 문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시조치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안)의 문제점

○ 나경원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적을 확대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 안이라고 평가한다.

○ 그러나 나경원안은 분쟁조정이 될 때까지 게시글을 임시 차단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게시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게시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여부 판단이 힘든 경우라고 보았을 때,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게시물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저작권법 상의 처리 원칙과도 일관성을 갖는다.

다.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역시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같은 조 8항의 면책 규정과 법리적으로 모순된다. 이 조항은 법리적인 모순도 갖고 있음. 같은 조 8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제112조 8항)고 하여, 2항을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르지 않은 책임은 결국 사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2항은 면책 요건임과 동시에 의무조항으로 법리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제112조 하단은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하느냐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법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제112조 4, 5, 6항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게시자 사이의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방송 심의를 비롯하여 방대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을 담당할 전문적 분쟁조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좀 더 면밀하게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향

○ 현행 제44조의2 제1항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임시조치의 대상을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게시글은 복원되어야 한다.

○ 게재자의 이의신청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쟁조정은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되어야 한다.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표현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표현물이 삭제될 경우, 이용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내용 규제는 비록 사후심의이지만, 사전검열과 같은 ‘위축적 효과’를 초래한다.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은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이 아닌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나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행동을 구분하여 표현을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 헌법원리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눈치를 계속 보거나 아예 표현물의 표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사후심의를 대해서는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사전검열 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에 포함시켜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시행령 16조가 모두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될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개선방향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내용 심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심의’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제44조의 7 1항은 1호 및 5호를 제외하고

는 삭제되어야 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용 심의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하면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만 하게 되어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에 의해, 불법정보 외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 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인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설치법 21조의 4에 의해 시정 요구를 할 경우, 게시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시멘트’ 사례)

○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여년간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통심의로부터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받고 처분한 현황이 26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방통심위 차원에서 알아서 삭제하고 이용해지하고 접속차단을 한 현황은 1만6,849건에 이른다".²⁸⁾ 특히, 1만6,849건 중 1,312건은 ‘명예훼손’으로 삭제된 경우인데, 법적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법률 전문가도 아닌 방통심의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개선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행령 제8조)로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인터넷 내용 심의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로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제21조의 4는 삭제되어야 한다.

4)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문제점.

28)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le_id=20090429134154

○ 현황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 의무화
- 2008. 1. 17 구 정보통신부에서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자 공시 :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 (16개),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 (15개),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순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 (6개)
-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53개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본인확인제의 범위가 전체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62%를 포괄하는 규모에서 90%를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부안) : 의무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구글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채택 거부 (2009.4)

○ 문제는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하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다. 인증의 방법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다양할 수 있고, 각 방법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본인확인의 정확성 등에 차이가 있다. 게시판 시스템, 인증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댓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게시판 문화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하도록 한다면, 댓글을 쓸 때 클릭을 한번 더 하게 하는 것으로도 게시판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 **인터넷에서 실명제 게시판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 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 내부 고발자, 혹은 권력에 대한 비판자의 경우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위다.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전체 이용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한 악의적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불법적인 표현인 것은 아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존재한다. 일부 게시판에서 욕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체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다.

※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4.2)

○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 미 연방대법원은 1995년 맥킨타이어 대 오하이오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익명성은 악의적이거나 보다는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판시하였다. 1996년 조지아 주에서 추진한 ‘인터넷 사찰법(Internet Police Law: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그 모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미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글이 위험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익명의 게시자는 미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대법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는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터넷실명제처럼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강도가 미국보다 강하지만,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 또한 익명성은 오로지 최초로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때에만 침해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함. 또한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조라는 편의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사람 혹은 악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06년 초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례)

-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에 대한 고유 식별자이며, 평생 불변하는 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대다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쇠 역할을 함으로써,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피해를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영역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은 문제이다.

-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우려된다.

※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인터넷실명제 쟁점> (2008.8.28)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에는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및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위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다르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이핀제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사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체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의 명칭이 인터넷 실명제이든,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든, 혹은 본인 확인의 수단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이든, 아이핀이든, 혹은 공인인증서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본인 확인’(인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나. 개선 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화는 삭제되어야 하며, 본인 인증이나 실명제 등의 시스템 채택은 각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3.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사이버모욕죄

○ 현황

- 2008년 10월 30일 장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 2008년 11월 3일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사이버모욕에 대해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과 단순한 부정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 수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만취한채 민폐끼치는’, ‘순악질’, ‘머리용량 2MB’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혹은 ‘대통령님, 계속 해외 순방만 하세요~’라는 비꼬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는가? 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지되고 있음

-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도 처벌이 매우 경미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인 Ambeyi Ligabo은 2008년 2월 발표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 법리가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이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반의사 불벌죄로 입법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큼

- 인터넷 상에는 욕설, 비하적 표현, 비꼬는 표현 등이 널리고 널렸다. 과연 바쁜 수사기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수사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 국회입법조사처 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2) 모니터링 의무화

○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은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ISP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행자(Publisher/Speaker)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를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발행자로 보는 것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인지, 또한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형성된 시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불법 정보나 명예 훼손 정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설사 ISP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더라도, 제대로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ISP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230조), 이는 ISP가 선의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되, ISP를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 권리자 편향적인 협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정 제30항 나 7)에서도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102조 3항에서도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다목의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도 위와 같은 ‘모니터링 부존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최근 최문순 의원은 ‘모니터링 부존재’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29일, 권리자 단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한 바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가이드라인」 2항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물 유통이 표현물의 일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정보통신방법의 규정과 저작권법 상 규정이 상호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모니터링'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의 범위 역시 모호함. 예를 들어,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정도의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인 방식의 모니터링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